



코로나19발(發) 미국 기업의 조업중단 보상에 대한 논의

안소영 연구원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업의 조업중단으로 기업 손실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조업중단보험은 전염병에 의한 손실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뉴저지 주를 포함한 미국 7개 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 면책을 무효화하는 소급적용 법안을 발의함. 한편 연방정부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조업중단 위험을 보상하는 공사협력 보험체계 신설을 위해 전염병 위험 보험 법안(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을 발의함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의 손실 확대되고 있으나, 조업중단보험(BI)은 전염병에 의한 손실을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어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어려움

-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7개 주¹⁾에서 기업 영업중단 조치를 연장함²⁾
- 미국손해보험협회(American Property Casualty Insurance Association)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중단이 100인 이하 사업장의 월 4,31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함³⁾
 - 2003년 사스 사태 이후 미국은 2006년 ISO(Insurance Services Office)를 통해 바이러스 및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사항을 추가한 바 있음⁴⁾

■ 뉴저지 주를 포함한 7개 주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 면책을 무효화하는 소급적용 법안을 발의함⁵⁾

- 뉴저지 주는 면책사항으로 조업중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손실을 경감해주기 위해 코로나 면

1) 미 북동부인 뉴욕 주, 뉴저지 주, 코네티컷 주, 로드아일랜드 주, 펜실베이니아 주, 델라웨어 주, 매사추세츠 주가 이에 해당함
 2) THEHINDU(2020), "Seven U.S. States extend coronavirus shutdown to May 15", as Trump prepares to map out plan
 3) Insurance Journal(2020), "Litigation Builds Against Insurers Over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4) Financial Times(2020), "US legal battle looms over coronavirus insurance payouts"
 5) Reinsurance Reviews(2020), "COVID-19 business interruption legal action expands"

책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 법안에 따르면 주 정부는 보험회사가 기업의 조업중단 보상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후에 보험회사는 뉴저지 은행 및 보험 당국(New Jersey Department of Banking and Insurance)에 보상받을 수 있음
-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3월 9일 부터 소급 적용되며 주 25시간 이상 정규직 100인 미만 보험계약사업장에 적용됨
- 뉴욕 주, 펜실베이니아 주, 루이지애나 주, 오하이오 주, 매사추세츠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됨

■ 보험업계는 뉴저지 주 등에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함

- 보험회사는 조업중단 보상을 인수할 시점에 해당 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되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재무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를 표명함⁶⁾
 - 미국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800억 달러의 잉여자본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전역 정규직 100인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을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1,100억~2,900억 달러로 추산되어 지급능력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함
- 뉴저지 주에서 소급적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주까지 법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회사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한편 연방정부는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조업중단 위험을 보상하는 공시협력 보험체계 신설을 위해 전염병 위험 보험 법안(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을 발의함⁷⁾

- 전염병 위험 보험 법안(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은 911 사태 이후 2002년 제정된 테러 위험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참여 보험회사와 정부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임
 - 해당 프로그램은 연간 총 5,000억 달러까지 보장해주며, 첫 2억 5천만 달러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보험회사가 각각 95%, 5%씩 분담함
-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는 선택적이며 재무부가 전염병 위험 재보험 프로그램(Pandemic Risk Reinsurance Program)을 운영하며 보험회사의 재보험 역할을 하게 됨
- 연방정부의 법안은 공사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보장체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임 **KIRI**

6) Financial Times(2020), "US legal battle looms over coronavirus insurance payouts"

7) Business Insurance(2020), "Proposed backstop would cover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